



보도	2024.8.12.(월) 석간	배포	2024.8.9.(금)		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	책임자 담당자	팀 장 선임조사역	이재민 김종현	(02-3145-7471) (02-3145-7472)
	보험개발원	책임자	<u>팀</u> 장	성원명	(02-368-4048)
	자동차보험팀	담당자	수 석	조남기	(02-368-4170)

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.

주요 내용

- □ (개선배경)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'대리운전자보험'을 가입하고 있으나,
 -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*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.
 - *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 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 종사가 곤란
- □ (개선내용) 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
 - o 대리운전자보험에 '사고건수별 할인·할증제도'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,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.

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·할증제도 주요내용

무사고자의 보험료 할인

①1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,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무사고 경력(최대 3년)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

사고건수를 고려한 보험료 할증

- 02 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
- 보험사별 인수기준의 완화 03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 확대

Ⅰ. 추진 배경

- □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대리운전자별 사고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* 多사고자의 가입 거절이 빈번함에 따라,
 - * 단순히 사고 유무만 고려하는 경우 일부 존재(예:사고자는 일률적으로 5.7% 할증 등)
 - **대리운전**을 통해 **생업**을 **유지**하여야 하는 **대리운전기사**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**생계**가 **위협***받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 - *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 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 종사가 곤란
- □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**多사고이력**이 있는 **대리운전기사**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
 -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건수별 할인·할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'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*('23.12월, 보도자료)'을 발표하였습니다.
 - * 금융당국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'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(보도자료, '23.12월)에도 포함

※ 대리운전자보험 개선방안 주요내용

<이번 개선대상>

- ① (할인·할증제도 도입)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·할증제도 도입 <개선완료('24.4월)>
- ② (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) 대리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시 차주(대리운전이용자)의 렌트비용을 보상
- ③ (대물·자차 보상한도 확대) 고가차량과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(최대 2억원 → 10억원) 및 자차(최대 1억원 → 3억원) 보상한도 확대
- ➡ 개선방안의 마지막 후속조치로 대리운전자보험에 '사고건수별 할인·할증제도'를 도입하고,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합니다.

Ⅱ. 개선내용

가. 사고건수별 할인·할중제도 도입

- □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(0~3건 이상)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합니다.
 - (무사고자)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(최대 3년)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합니다.
 - (사고자) 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
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합니다.
 - ※ 최대 할인·할증폭은 △11.1%~45.9%로 개인용(△10.9%~65.5%)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낮은 수준
- □ 한편,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 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
 - 저과실(과실비율 50% 미만)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^{*}하여 **할증폭을 최소화**하고,
 - * 사고 피해자라도 교통사고에 과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무사고자와 차별화
 - 대풍,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
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하여 할증하지 않습니다.
 - ※ 대리운전자보험의 사고 세부내역 집적이 개시된 '24.6월 이후 사고부터 제외

나. 보험사별 인수기준 완화

- □ 보험사는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
 -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*하여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합니다.
 - * [예시] (기존) 3년내 3건사고 → (개선) 3년내 5건 이상 사고시 가입거절
 - ※ 회사별로 인수기준은 상이하며, 회사는 사고건수 외에도 연령,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

皿. 기대효과

①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 보장

○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② 안전운전 유인 증가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

○ **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**을 받을 수 있게 되어 **안전운전 유인이 증가**하고 **사고예방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Ⅳ. 시행시기

- □ 대리운전자보험 **사고건수별 할인·할증제도** 및 보험사별 **완화**된 **인수기준은 '24.9.6일**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.
 - 多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*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(9월) 즉시 적용하되,
 - * 현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중 多사고로 현행 인수기준 하에서는 갱신시 가입 거절이 예상되는 대리운전기사 포함
 -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합니다.

붙임

대리운전자보험 판매회사

구분	연락처 (콜센터 번호)	홈페이지	
KB손보	1544-0114	www.kbinsure.co.kr	
DB손보	1588-0100	www.idbins.com	
현대해상	1588-5656	www.hi.co.kr	
삼성화재	1588-5114	www.samsungfire.com	
메리츠화재	1566-7711	www.meritzfire.com	
롯데손보	1588-3344	www.lotteins.co.kr	